##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찬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75 발의연월일 : 2025. 4. 28.

발 의 자: 박찬대·노종면·유동수

이훈기 · 허종식 · 모경종

맹성규 · 김교흥 · 임호선

김용만 • 진선미 의원

(11일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은 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 소재지,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있었으나, 해사국제상사법원 신설시 이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수정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등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0180호), 「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4호), 「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81호), 「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 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9호), 「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6호),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8호), 「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017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지방법원"을 "해사국제상사법원"으로 한다.

제30조제2항 중 "법원"을 각각 "해사국제상사법원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 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책임제한사건의 관할) 책임	제2조(책임제한사건의 관할)		
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			
있는 채권(이하 "제한채권"이라			
한다)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(船			
籍) 소재지, 신청인의 보통재판			
적(普通裁判籍) 소재지, 사고			
발생지,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			
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			
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			
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			
된 곳을 관할하는 <u>지방법원</u> 의	<u>해사국제</u>		
관할에 전속(專屬)한다.	<u>상사법원</u>		
제30조(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	제30조(담보권 실행에 대한 이의		
의 소) ① (생 략)	의 소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제1항에 따른 소는 피고의	②		
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			
법원 또는 담보권의 목적이 되	해사국제상사법원		
는 재산 소재지의 <u>법원</u> 의 관할	<u>해사국제상사법원</u>		
에 전속한다.	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